

---

## Policy and Law Report \_Vol.16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1.14~ 11.20) -

*November 22,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p> <b>•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b> </p> <p>                     기획재정부는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함                 </p> <p>                     또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해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T/F」의 점검 및 협의·조정을 거쳐 자산효율화 계획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함                 </p> <p>                     주요 내용으로는                 </p> <p> <b>① (자산효율화) '22~'27년 총 14.5조원 자산효율화 추진</b> </p> <table border="1" data-bbox="355 902 1332 1137">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자산매각</th> <th rowspan="2">지분정비</th> <th rowspan="2">합계</th> </tr> <tr> <th>부동산</th> <th>부동산외</th> <th>소계</th> </tr> </thead> <tbody> <tr> <td>건수(개)</td> <td>330</td> <td>189</td> <td>519</td> <td>275</td> <td>794</td> </tr> <tr> <td>금액(조원)</td> <td>11.6</td> <td>0.7</td> <td>12.3</td> <td>2.2</td> <td>14.5</td> </tr> <tr> <td>(비중, %)</td> <td>(80.0)</td> <td>(4.8)</td> <td>(84.8)</td> <td>(15.2)</td> <td>(100.0)</td> </tr> </tbody> </table> <p> <b>- (비핵심 부동산) 124개 기관, 11.6조원(330건) 규모 정비</b> </p> <table border="1" data-bbox="355 1238 1332 1933"> <tbody> <tr> <td data-bbox="355 1238 539 1420"> <b>① 청사</b>  <small>* 舊본사·지사 통폐합 등</small> </td> <td data-bbox="539 1238 940 1420"> <b>[정비규모] 56건, 1.0조원</b>                      •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舊본사)                      • 기업은행 6개 지점                 </td> <td data-bbox="940 1238 1332 1420">                     • 한전 12개 지사                      • 정보통신진흥원 내 상업시설 등                 </td> </tr> <tr> <td data-bbox="355 1420 539 1601"> <b>② 사택</b>  <small>* 본사 인근사택·숙소</small> </td> <td data-bbox="539 1420 940 1601"> <b>[정비규모] 132건, 0.3조원</b>                      • 한전KPS 노후사택(보유)                      • LH 사택(보유)                 </td> <td data-bbox="940 1420 1332 1601">                     • 분당서울대병원 외부기숙사(임차)                      • 캠프 숙소(임차) 등                 </td> </tr> <tr> <td data-bbox="355 1601 539 1767"> <b>③ 유휴 부동산</b> </td> <td data-bbox="539 1601 940 1767"> <b>[정비규모] 107건, 9.4조원</b>                      • 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 공무원연금 도로부지                 </td> <td data-bbox="940 1601 1332 1767">                     • 마사회 서초부지                      • 보훈복지 건제사업단 부지 등                 </td> </tr> <tr> <td data-bbox="355 1767 539 1933"> <b>④ 업무지원 시설 등</b> </td> <td data-bbox="539 1767 940 1933"> <b>[정비규모] 35건, 0.9조원</b>                      • 경북대병원 양남연수원                      •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td> <td data-bbox="940 1767 1332 1933">                     • 수자원공사 연수시설(부지)                      • 적십자사 검천연수원 등                 </td> </tr> </tbody> </table>	구분	자산매각			지분정비	합계	부동산	부동산외	소계	건수(개)	330	189	519	275	794	금액(조원)	11.6	0.7	12.3	2.2	14.5	(비중, %)	(80.0)	(4.8)	(84.8)	(15.2)	(100.0)	<b>① 청사</b> <small>* 舊본사·지사 통폐합 등</small>	<b>[정비규모] 56건, 1.0조원</b> •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舊본사) • 기업은행 6개 지점	• 한전 12개 지사 • 정보통신진흥원 내 상업시설 등	<b>② 사택</b> <small>* 본사 인근사택·숙소</small>	<b>[정비규모] 132건, 0.3조원</b> • 한전KPS 노후사택(보유) • LH 사택(보유)	• 분당서울대병원 외부기숙사(임차) • 캠프 숙소(임차) 등	<b>③ 유휴 부동산</b>	<b>[정비규모] 107건, 9.4조원</b> • 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 공무원연금 도로부지	• 마사회 서초부지 • 보훈복지 건제사업단 부지 등	<b>④ 업무지원 시설 등</b>	<b>[정비규모] 35건, 0.9조원</b> • 경북대병원 양남연수원 •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 수자원공사 연수시설(부지) • 적십자사 검천연수원 등	2022-11-11
	구분		자산매각					지분정비	합계																																
		부동산	부동산외	소계																																					
	건수(개)	330	189	519	275	794																																			
금액(조원)	11.6	0.7	12.3	2.2	14.5																																				
(비중, %)	(80.0)	(4.8)	(84.8)	(15.2)	(100.0)																																				
<b>① 청사</b> <small>* 舊본사·지사 통폐합 등</small>	<b>[정비규모] 56건, 1.0조원</b> •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舊본사) • 기업은행 6개 지점	• 한전 12개 지사 • 정보통신진흥원 내 상업시설 등																																							
<b>② 사택</b> <small>* 본사 인근사택·숙소</small>	<b>[정비규모] 132건, 0.3조원</b> • 한전KPS 노후사택(보유) • LH 사택(보유)	• 분당서울대병원 외부기숙사(임차) • 캠프 숙소(임차) 등																																							
<b>③ 유휴 부동산</b>	<b>[정비규모] 107건, 9.4조원</b> • 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 공무원연금 도로부지	• 마사회 서초부지 • 보훈복지 건제사업단 부지 등																																							
<b>④ 업무지원 시설 등</b>	<b>[정비규모] 35건, 0.9조원</b> • 경북대병원 양남연수원 •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 수자원공사 연수시설(부지) • 적십자사 검천연수원 등																																							

부처	내용	일시
<p>-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107개 기관, 0.7조원(189건) 규모 정비</p>		
<p>① 골프 회원권</p>	<p>[정비규모] 8개 기관에서 15구좌, 74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은행(1구좌)</li> <li>• 신용보증(3구좌)</li> <li>• 산업은행(2구좌)</li> <li>• 한전(4구좌) 등</li> </ul>	
<p>② 콘도·리조트 회원권</p>	<p>[정비규모] 92개 기관에서 2,298구좌, 430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전(792구좌)</li> <li>• 조폐공사(336구좌)</li> <li>• 마사회(148구좌)</li> <li>• 도로공사(60구좌) 등</li> </ul>	
<p>③ 유휴 기계·설비</p>	<p>[정비규모] 24건, 801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부발전 서천본부, 보령1·2호기 폐지 설비</li> <li>• 부산항만공사 노후 컨테이너크레인 2기 등</li> </ul>	
<p>④ 기타 유휴자산</p>	<p>[정비규모] 20건, 0.6조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자원공단 시험조사선</li> <li>• 해양환경공단 선박 3개</li> <li>• 우체국물류지원단 노후차량</li> <li>• 기업은행 ATM기 등</li> </ul>	
<p>-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69개 기관, 2.2조원(275건) 규모 정비</p>		
<p>① 목적 달성</p>	<p>[정비규모] 105건, 0.7조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전, 캡코 일리한 등</li> <li>• 기업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 등</li> </ul>	
<p>② 업무 무관</p>	<p>[정비규모] 72건, 0.3조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전KDN·마사회, YTN</li> <li>• 도로공사, 드림라인</li> <li>• 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우사회</li> <li>• 경북대병원, 대구시민프로축구단 등</li> </ul>	
<p>③ 손실 확대</p>	<p>[정비규모] 85건, 0.2조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공사, KOGAS Akkas</li> <li>• 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li> <li>• 한전 외 7개사, 캡코우데</li> <li>• 강원랜드, 하이원엔터 등</li> </ul>	
<p>④ 기타</p>	<p>[정비규모] 13건, 1.0조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 5사, 인니 바안광산</li> <li>• 한수원, DENISON 등</li> </ul>	

부처	내용	일시				
	<p>- (청사효율화) 매각 56건, 유휴공간 신규임대 62건, 임차면적 축소 86건 등</p> <table border="1" data-bbox="347 394 1326 1064"> <tr> <td data-bbox="347 394 469 90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b>1</b> 매각</td> <td data-bbox="469 394 1326 904"> <p>舊 본사 매각 및 지사 통폐합 등 → 56개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舊본사 매각)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매각 (3개소) *한전기술(舊본사, 용인), LH(舊본사, 분당), 한국교육개발원(舊 본사, 서초)</li> <li>• (지사 통폐합 등) 경영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한 통폐합 · 이전 (44개소) *LX(평택송탄지사 등 8개소), 기은(장위동지점 등 6개소), 한전(경기북부분부 등 12개소), 근로복지공단(광주콜센터) 등</li> <li>• (불요불급 시설매각) 업무 연관성이 낮은 시설 등 매각 (2개소) *신보(남대문지점) 및 정보통신진흥원(누리꿈스퀘어) 內 상업시설</li> <li>• (기타) 유휴면적 일부 매각* (2개소) 및 청사노후* (5개소) *기보 인천지점, 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 유휴면적 일부 매각 ** 광해공단(강원지사), 부동산원(동래지점, 구미지점), 에너지공단(부울본부) 등</li> </ul> </td> </tr> <tr> <td data-bbox="347 904 469 106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b>2</b> 신규 임대 등</td> <td data-bbox="469 904 1326 10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청사) 업무면적 정비 후 유휴면적 신규임대 → 62개소 (125억원/년)</li> <li>• (임대청사) 업무면적 정비에 따른 임차면적 축소 → 86개소 (116억원/년)</li> <li>• (임원사무실) 기관장 및 상임임원 사무실면적 축소 → 150개 기관</li> </ul> </td> </tr> </table> <p>⇒ 각 공공기관에서는 고유·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필수자산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비효율 및 누적손실 부문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 마련</p> <p>※ 각 기관에서 제출한 금액(장부가액 또는 자체평가액) 기준이며, 매각 추진과정에서 실제 매각규모는 차이가 날 전망</p>	<b>1</b> 매각	<p>舊 본사 매각 및 지사 통폐합 등 → 56개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舊본사 매각)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매각 (3개소) *한전기술(舊본사, 용인), LH(舊본사, 분당), 한국교육개발원(舊 본사, 서초)</li> <li>• (지사 통폐합 등) 경영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한 통폐합 · 이전 (44개소) *LX(평택송탄지사 등 8개소), 기은(장위동지점 등 6개소), 한전(경기북부분부 등 12개소), 근로복지공단(광주콜센터) 등</li> <li>• (불요불급 시설매각) 업무 연관성이 낮은 시설 등 매각 (2개소) *신보(남대문지점) 및 정보통신진흥원(누리꿈스퀘어) 內 상업시설</li> <li>• (기타) 유휴면적 일부 매각* (2개소) 및 청사노후* (5개소) *기보 인천지점, 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 유휴면적 일부 매각 ** 광해공단(강원지사), 부동산원(동래지점, 구미지점), 에너지공단(부울본부) 등</li> </ul>	<b>2</b> 신규 임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청사) 업무면적 정비 후 유휴면적 신규임대 → 62개소 (125억원/년)</li> <li>• (임대청사) 업무면적 정비에 따른 임차면적 축소 → 86개소 (116억원/년)</li> <li>• (임원사무실) 기관장 및 상임임원 사무실면적 축소 → 150개 기관</li> </ul>	
<b>1</b> 매각	<p>舊 본사 매각 및 지사 통폐합 등 → 56개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舊본사 매각)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매각 (3개소) *한전기술(舊본사, 용인), LH(舊본사, 분당), 한국교육개발원(舊 본사, 서초)</li> <li>• (지사 통폐합 등) 경영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한 통폐합 · 이전 (44개소) *LX(평택송탄지사 등 8개소), 기은(장위동지점 등 6개소), 한전(경기북부분부 등 12개소), 근로복지공단(광주콜센터) 등</li> <li>• (불요불급 시설매각) 업무 연관성이 낮은 시설 등 매각 (2개소) *신보(남대문지점) 및 정보통신진흥원(누리꿈스퀘어) 內 상업시설</li> <li>• (기타) 유휴면적 일부 매각* (2개소) 및 청사노후* (5개소) *기보 인천지점, 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 유휴면적 일부 매각 ** 광해공단(강원지사), 부동산원(동래지점, 구미지점), 에너지공단(부울본부) 등</li> </ul>					
<b>2</b> 신규 임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청사) 업무면적 정비 후 유휴면적 신규임대 → 62개소 (125억원/년)</li> <li>• (임대청사) 업무면적 정비에 따른 임차면적 축소 → 86개소 (116억원/년)</li> <li>• (임원사무실) 기관장 및 상임임원 사무실면적 축소 → 150개 기관</li> </ul>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내 최초로 OTT 산업의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글로벌 논의의 장 마련</b></li> </ul> <p>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1회 「국제 OTT포럼」을 개최한 바, 동 포럼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글로벌 OTT행사로서,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됨</p> <p>‘미래를 향한 도약(Leap the Future)’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OTT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고, 국내 OTT의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함</p> <p>주요 세션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는 OTT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는가</li> <li>② 아시아 OTT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OTT 규제현황 및 시장상황</li> <li>- 대만 OTT 시장상황 및 현지화 성공 전략</li> </ul> </li> </ol>	2022-11-16				

부처	내용	일시
	<p>③ 해외 주요 국가 시청자는 OTT를 어떻게 시청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시청자의 OTT 이용행태</li> <li>- 대만, 인도네시아 시청자의 OTT 이용행태</li> </ul> <p>④ K-OTT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p>	
금융 위원회	<p>• 「<b>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b>」 및 「<b>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b>」 보고·논의</p> <p>「금융규제혁신회의」는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보고 받고 논의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업권, 핀테크·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할 계획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금융회사와 비금융분야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 개선방향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나열식으로 규정된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를 일부 추가나열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전면 네거티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li> </ul> <p>②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위탁이 가능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 논의</p>	2022-11-14

##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 <a href="#">「대외무역법 일부개정」(2022.11.15. 시행)</a></p> <p>현행법은 수출실적 및 중소기업 제품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무역거래자 중에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여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전문무역상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러나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에게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제47조제1호 신설)</p>	2022-11-15
산업통상자원부	<p>• <a href="#">「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2.11.15. 시행)</a></p> <p>산업단지에는 2019년 전국 제조업 대비 생산, 수출, 고용 비중이 각각 63.9퍼센트, 65.7퍼센트, 49.2퍼센트에 이르는 등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에 따른 전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기능하여 왔음</p> <p>그러나 국내 산업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산업단지의 지대한 영향력과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평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한국경제발전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는 국가적 기념일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p> <p>이에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근거를 최초로 규정한 舊「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인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정하여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매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3조의3 신설)</p>	2022-11-1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 <b>「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b> (2022.11.15. 시행)</p> <p>현행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b>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제32조제1항)</b></p>	2022-11-15
	<p>• <b>「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b> (2022.11.15. 시행)</p> <p>현행법은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보세운송의 신고 등 그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을 준용하고 있음</p> <p>그런데 「관세법」은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단순 업무착오 등 과실로 인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감경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세운송에 관하여 「관세법」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p> <p>이에 자유무역지역의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감경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61조 단서조항 신설)</p>	2022-11-15
환경부	<p>• <b>「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b> (2022.11.14. 시행)</p> <p>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검사의 유예의 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p> <p>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 감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b>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중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대형 경유사용 자동차 정기검사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종전의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강화하고, 경유사용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시 질소산화물 센서, 요소수 관련 센서 등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하도록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86조의2제1항, 제86조의5제2항, 별표21 제1호차목 삭제, 같은 표 제2호나목 등)</b></p>	2022-11-14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을 요소수와 질소산화물의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O2)와 질소(N2)로 전환시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장치</p> <p>• <b>「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1.15. 시행)</b></p> <p>중복되는 수입절차와 관련된 화학물질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와 유독물질 수입신고 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b>해당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으면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면제하려는 것임 (제10조, 제20조의 2제1항 등)</b></p> <p>*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危害性)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예시: 납, 카드뮴, 백석면 등)</p> <p>** 유독물질: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화학물질(예시: 납, 카드뮴,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수소 등)</p>	2022-11-15
국토교통부	<p>• <b>「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5.16. 시행 예정)</b></p> <p>드론의 활용 범위 확대 등 국내 드론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드론의 불법 비행, 뺑소니 등 사고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드론 관련 사고 발생 시 지방항공청,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기관별로 신고가 접수·처리되고 있어 관련 통계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고, 드론사용사업자 등 의무보험 가입자의 보험 가입 및 보험 청구 등의 보험 이력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아 정부 차원의 보험가입 유도 등 체계적인 안전 개선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p> <p>또한 드론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기체 신고 정보, 종사자의 자격 정보,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 등이 분산·관리되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법적 근거도 없어 드론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이에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드론 관련 사고 및 보험 정보, 드론의 기체 신고, 종사자 자격,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 등을 포함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9조의2 신설)</p>	2022-11-1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 <b>「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2023.6.11. 시행 예정)</b></p> <p>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말소된 자동차의 일부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와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폐차를 수집·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편,</p> <p>중고자동차를 매매하기 전에 실시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의 준수사항으로 거짓 점검 금지, 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번호판을 뺄 수 있도록 함 (제10조제2항)</li> <li>②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는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함 (제26조의2제2항 신설)</li> <li>③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률 제189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2호 신설 및 제81조제25호의2 신설)</li> <li>④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기준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함 (제58조제2항)</li> <li>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함 (제58조제3항 신설)</li> <li>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또는 그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폐차해야 함 (제58조제6항제1호의2 신설 등)</li> <li>⑦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 (제58조제8항, 제80조제9호의2 및 제84조제4항제22호의2·제22호의3 신설 등)</li> </ol>	2022-11-1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⑧ 자동차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적인 기록·관리·보존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의 전송 등의 의무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도 부여함 (제58조제9항 및 제10항)</p> <p>⑨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장 폐쇄 또는 사업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제66조제5항 신설)</p> <p>⑩ 자동차관리 업무와 관련한 보고·검사 대상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를 추가하고, 금지 명령 또는 조사·확인 등 단속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경우를 추가함 (제72조제16호 및 제73조제4호 신설)</p>	
중소벤처기업부	<p>• 「<b>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b>」(2023.5.16. 시행)</p> <p>기존에는 기업의 최우선 가치를 재무적 요소에 두고 기업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항이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및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기업 경영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p> <p>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변화에 대한 대응 수준도 선진국의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의 변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임</p> <p>이에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8조제2항 신설)</p>	2022-11-15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 <b>「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b></p> <p>OTT의 성장, 1인 미디어 확산 등 유료방송 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겸영 제한 폐지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겸영 제한 폐지 (안 제 8조제4항)</p> <p>※ 의견 제시기간 : 11/16(수)~12/1(목)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a>로 제출</p>	2022-1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 <b>「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b></p> <p>유료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는 역외 재송신 승인제를 폐지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제 개선 (안 제2조제3호·제9조제5항 등) -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을 하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하여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고, 그 밖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로 진입규제를 완화</p> <p>②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 개선 (안 제78조제4항)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라디오방송 등에 대한 역외 재송신 승인제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라디오방송 등에 대한 재송신 승인제를 폐지</p> <p>※ 의견 제시기간 : 11/16(수)~12/1(목)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a>로 제출</p>	2022-11-1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p>• <b>「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신규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하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비율을 상향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대기환경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임차비율 조정 (안 제18조의2제1항·제2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임차 의무비율을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80%)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100%로 조정하고 (안 제18조의2제1항)</li> <li>- 차량 수급 차질 등으로 당해 연도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의2제2항)</li> </ul> <p>※ 의견 제시기간 : 11/15(화)~12/26(월)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과)</a>로 제출</p>	2022-11-15
	<p>• <b>「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시키기 위해 발전설비용량 상한을 기존 ‘30만 킬로와트 이하’에서 ‘50만 킬로와트 이하’로 확대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003호, 2022.10.18., 일부개정·시행)되었으나,</p> <p>현행 시행령은 법상 상한 내에서 집단에너지사업별로 발전설비용량을 다시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개정 취지에 맞추어 용량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집단에너지사업자별 발전설비용량 상한 폐지 (현행 제59조제1,2호 삭제)”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의 발전설비용량이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상 발전설비용량을 상한할 필요가 있음”</li> <li>- 또한,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집단에너지사업별로 지역냉난방과 산업단지를 구분하여 발전설비용량을 제한”한 문제점이 있음</li> </ul>	2022-11-1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법과 일치시킴에 따라 분산형전원과 구역전기사업자간 용량불일치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됨</p> <p>※ 의견 제시기간 : 11/15(화)~12/25(일)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a>로 제출</p>	
<p>공정거래 위원회</p>	<p>• 「<b>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b>」</p> <p>거래여건 변화 및 소비자 분쟁현황,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실적합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동통신서비스업) 가입 후 6개월 이후 통화품질 불량시 분쟁해결기준 신설, 서비스 장애·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시간 및 손해배상액 변경</li> <li>②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서비스 장애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누적시간 단축, 서비스 장애·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시간 및 손해배상액 변경</li> <li>③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주요부품 품질보증기간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내용 반영</li> <li>④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의 이용으로 이용자에게 피해 발생 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명확히 함</li> <li>⑤ (체육시설업 등) 이용 횟수로 계약한 경우의 분쟁해결기준을 추가하는 등 체육시설업법령 내용과 일치시킴</li> <li>⑥ (골프장) 이용 전 계약해제 시 환급기준 신설 등 표준약관과 일치시킴</li> <li>⑦ (기타) 부품보유기간 기산점 통일 등</li> </ol> <p>※ 의견 제시기간 : 11/15(화)~12/5(월)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a>로 제출</p>	<p>2022-11-15</p>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 <b>「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b></p> <p>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대금(납품단가)을 인상 조정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벌점 경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원사업자가 1차사인 수급사업자에게 하위 수급사업자와의 연동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가 부당한 경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할 필요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 (안 III.21.가.(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동계약 체결비율'은 기준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대비 연동계약을 포함한 계약건수의 비율로 정의</li> <li>- '계약건수'는 기준연도에 체결한 신규계약, 갱신계약, 연동계약을 신규 도입하는 변경계약의 합으로 산정</li> <li>- '연동계약' 인정요건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조정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연동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정함</li> </ul> <p>② <b>대금 인상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 (안 III.21.가.(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금 인상실적'은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 대비 기준연도에 인상 지급한 대금의 총액의 비율로 정의</li> <li>-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기준연도에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계약에 대해,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가계약을 한 경우, 최초 계약된 단가와 대금 지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하여 산정</li> <li>* 기준연도에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 일부 지급된 부분이 목적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대금 총액에 곱하여 산정</li> </ul> </li> <li>- '인상하여 지급한 대금'은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제하여 산정</li> <li>-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이익 보호 노력에 따라 최고 1점 추가 감경</li> </ul> <p>③ <b>원-수급사업자간 연동계약 권장 근거 마련 (안 III.17.다.(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자신의 수급사업자에게 하위협력사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권유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가 아님을 명시</li> </ul> <p>※ 의견 제시기간 : 11/15(화)~12/5(월)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a>로 제출</p>	2022-11-1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 <b>「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b></p> <p>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3. 1. 12. 예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여야 하는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을 마련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공시의무사항 구체화(안 제4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수단)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대체결제수단제(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대체결제수단(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60일 이하, 60일 초과)을 만기별로 구분하여 지급수단별 지급금액·비중 및 현금(성)결제비율을 공시하도록 구체화하여 규정함</li> <li>- (지급기간)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li> <li>- (분쟁조정기구)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바와 동일하게 규정함</li> </ul> <p>② <b>공시빈도 및 시기(안 제5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대로 6월 30일 및 12월 31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함</li> </ul> <p>③ <b>공시절차 및 양식(안 제6조 및 제7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대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세부 절차는 유사 제도인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규모내부거래공시와 동일하게 규정함</li> </ul> <p>※ 의견 제시기간 : 11/15(화)~12/5(월)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a>로 제출</p>	2022-11-15
	<p>• <b>「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b></p> <p>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3. 1. 12. 예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여야 하는바, 하도급대금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행정규칙을 마련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가중·감경규정(안 IV. 2. 임의적 조정금액)</b></p>	2022-11-1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법령에서 위임한대로 임의적 가중금액은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경금액은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li> <li>- <b>(가중사유)</b> 최근 5개년 간 공시업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하도록 규정함</li> <li>- <b>(감경사유)</b> 최초 위반인 경우 또는 최근 5개년 간 범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 감경,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 감경하도록 규정함</li> </ul> <p><b>② 부과 과태료의 결정 (안 IV. 3. 부과 과태료의 결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동일하게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은 위반행위 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li> </ul> <p>※ 의견 제시기간 : 11/15(화)~12/5(월)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a>로 제출</p>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정무위원회	<p>• <b>「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0인)」</b></p> <p>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지속 성장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 또한 급증하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소수 온라인 플랫폼으로 독점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p> <p>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p> <p>중소 이용사업자는 물론, 상당한 규모의 이용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이용사업자들은 불합리한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p> <p>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다종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규율하며,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등을 도입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 (안 제6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거래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li> <li>-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용을 권장하도록 함</li> </ul> <p>② <b>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 (안 제7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그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중개거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li> <li>-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li> </ul>	2022-11-08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③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안 제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li> <li>-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li> </ul> <p>④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 (안 제12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li> <li>-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li> <li>-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li> </ul> <p>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 (안 제20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li> <li>-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해지 등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li> <li>-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li> </ul> <p>⑥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안 제2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li> <li>-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li> </ul>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⑦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안 제3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li> <li>-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li> </ul>	
	<p>• <b>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1인)</b></p> <p>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p> <p>현행법은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p> <p>이에 기술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신설하려 하는 것임 (안 제 35조, 제35조의6 신설)</p>	2022-11-11
	<p>• <b>「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2인)」</b></p> <p>현행법은 보험협회의 업무로 ①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②보험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개정, ③보험 상품의 비교·공시, ④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음</p> <p>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25조제1항 상호협정의 인가 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협회 내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연간 10만건이 넘는 보험회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동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이 아닌 상호협정이라는 점에서 분쟁 조정 업무 수행의 안정성에 일부 한계가 있는 현실임</p>	2022-11-11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따라서,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의 자율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상호협정에서 보험업법으로 상향하여 <b>보험협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b>를 추가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분쟁의 자율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안 제175조제3항제1호의3 신설)</p> <p>• <b>「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b></p> <p>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공급원가 상승 등으로 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행 협상을 할 수 있음</p> <p>그리고 대행 협상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만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규정함</p> <p>그러나 실무상 대행 협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그와 같은 신청요건이 대행 협상의 활성화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수급사업자는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공급 원가가 크게 상승한 경우에만 대금 조정을 신청하고 있어, 대행 협상 제도가 남용될 우려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됨</p> <p>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만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여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16조의2제2항)</p>	2022-11-15
기획재정위원회	<p>• <b>「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b></p> <p>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가 부상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의해 발전량이 크게 영향을 받는 간헐성을 내포하고 있음</p> <p>이러한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형원전에 비하여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 안전성과 유연성 및 운영의 용이성이 높은 중소형원자료가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에너지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형원자로 개발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p>	2022-11-14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이에 중소형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담금 설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당 부담금의 부과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별표 제96호 신설)</p>	
<p>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p>	<p>• <b>「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1인)」</b></p> <p>최근의 온라인 광고는 단순 텍스트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광고의 형태가 다양해졌으며 노출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에 게시된 광고의 경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광고가 화면을 가리거나 해당 광고의 삭제를 어렵게 하는 방식 등을 통해 광고접속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용자 요구 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의9 및 제76조제3항제12호의5 신설)</p>	<p>2022-11-17</p>
<p>문화 체육관광 위원회</p>	<p>• <b>「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b></p> <p>방송보상금제도는 TV, 라디오 등의 방송 제작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그동안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시의 권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 최근 K-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 토대가 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p> <p>한편, 최근 방송 콘텐츠 사업 환경은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VOD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방송보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방송사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리자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p> <p>이는 방송사를 통해서 제작되는 많은 콘텐츠들이 방송 직후 또는 방송 중 IPTV, OTT등으로 제공되어 고객들에게 소비되는 콘텐츠 유통 구조와 고객 이용 형태가 현 제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임</p> <p>이에 저작권 이용 관계의 발전을 위해 도입됐던 방송보상금제의 취지가 더 빠르게 변하는 현재에도 계승/확대되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p>	<p>2022-11-17</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p>	<p>• 「<b>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33인)</b>」</p> <p>최근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였음</p> <p>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면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경제학적 논의와 함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다양한 업종·품목과 기업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와 조정요건 등을 정하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함</p> <p>한편 현행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중소기업계는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수탁기업의 신청 없이도 수탁·위탁기업 간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함</p> <p>현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일률적 규제 적용을 하지 않도록, 소액계약이나 단기 계약, 기업 간 합의에 의한 경우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되, 동시에 탈법행위 금지 등 실효성 제고 장치가 필요함</p> <p>이에, 모든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발급하여야 하는 약정서의 기재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세부내용은 기업간 협의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요 원재료”를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하고, “납품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함 (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신설)</li> <li>②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함 (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li> <li>③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21조제3항 신설)</li> </ol>	<p>2022-11-11</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④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21조제4항 및 제43조제3항제1호의2 신설)</p> <p>⑤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p> <p>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함 (안 제38조제2항)</p>	
	<p>•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p> <p>인류 생존을 위해 전 지구적 위협으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p> <p>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대표적 저탄소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고려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간헐성으로 인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어려움.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근본적 한계인 간헐성은 주로 화석연료 발전을 예비(Back-up) 발전원으로 보완하는데, 이 경우 상당량의 탄소가 배출되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싼 전력생산 단가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음</p> <p>이에 국민 부담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또 다른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사용해야 함</p> <p>이러한 탄소 배출 감축과 경제 발전이라는 딜레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직면한 문제로서, 이들 국가에도 실효적 해결책인 원자력을 제공하면 인류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p> <p>발전원(發電源)으로서 현재 사용되는 원자력발전소는 용량이 큰 대형원전으로, 이들 원전은 대규모 초기투자 비용, 장기간 건설,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 문제, 전력망이 작은 국가의 도입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규 건설 수요가 제한적임</p> <p>그 대신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모듈 기반으로 용량을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탄력 운전을 통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및 스마트그리드 운영 등이 쉽고, 해수담수화 및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중소형원자로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p>	2022-11-14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이러한 글로벌 전력시장에 대응하여,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이 중소형원자로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임. 빌 게이츠를 비롯한 원전 리더들은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형원전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고유의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발·실증하고 상용화할 필요가 있음</p> <p>우리나라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형원자로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li> <li>② 중소형원자로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안 제2조)</li> <li>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6조)</li> <li>④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종합발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와 보완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8조)</li> <li>⑤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관한 정책, 발전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9조)</li> <li>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li> <li>⑦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실증을 위한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 (안 제13조)</li> <li>⑧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특정 지역에서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실증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li> </ol>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및 제16조)</p> <p>⑩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수출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출사업투자 회사를 설립하거나 수출사업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p> <p>⑪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p> <p>⑫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기금을 설치함 (안 제19조)</p> <p>⑬ 중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등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수출 촉진 지원, 전담기관 지원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p> <p>⑭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을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 (안 제24조)</p>	
	<p>• 「<u>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의원영의원 등 10인)</u>」</p> <p>서울·경기 지역의 전력 소비량은 국내 전력 소비량의 30%를 상회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전력 생산량은 소비량에 미치지 못하여 필요전력의 일부를 발전소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p> <p>한편,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은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재산적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으면서도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공급 원가가 반영된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어 현행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에 발전소 및 전기사용자와의 거리,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 전압 및 전력예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2항)</p>	2022-11-1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위원회	<p>• <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b></p> <p>2022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이에 이를 반영하여 특례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음</p> <p>한편,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강제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강제징수는 절차 및 방법만을 규정할 뿐 과세자료 이용, 대금지급 정지 등 징수율 제고 수단은 미비함. 또한,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일선 지자체에서는 근거 법률을 정하기 위해 개별법상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임</p> <p>이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의 강제징수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 아닌 「지방행정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체납징수절차 통일을 통한 업무상 혼돈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해소와 일관된 체납징수 수단 활용을 통한 징수 편의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9조제5항·제20조제2항)</p>	2022-11-15
국토교통위원회	<p>• <b>「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4인)」</b></p> <p>최근 5년간('17~'21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15배나 폭증하고, 사망자 수도 5배나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동킥보드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보호장치 착용률은 3.1%에 불과하는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p> <p>뿐만 아니라 무단 주·정차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이며, 전동킥보드 안전관련 부품 파손 및 오작동 등 전동킥보드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 제품도 속출하고 있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의 책임보험가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p> <p>이에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이용환경 안전강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사고피해 보장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이용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3조)</p>	2022-11-11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지자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의 의견을 들어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안 제5조)</li> <li>③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 또는 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li> <li>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구간을 제한하고, 거치구역을 지정·운영·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제11조, 제12조)</li> <li>⑤ 지자체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소 및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li> <li>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등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li> <li>⑦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li> <li>⑧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에게 2인 이상이 운전하는 행위 금지, 안전모와 같은 인명보호장구의 착용의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제한구역 및 거치제한구역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 및 만 16세 미만인 아동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안 제20조)</li> <li>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21조)</li> <li>⑩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22조)</li> <li>⑪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안 제23조)</li> <li>⑫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 대여사업의 약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등)</li> <li>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안 제29조제6항 및 제7항)</li> <li>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국·공유지에 허가를 받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공유지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함 (안 제31조)</li> </ul>	

###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11/24(목) 14:00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 안건심의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11/22(화)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103호 발간 -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경제안보 주요내용과 시사점 등	
	11/2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9호 발간 - 독일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입법례	
	11/23(수)	「World & Law」 2022-22호 발간 - 산업재해 없는 일터, 어떻게 만들지?	
	11/24(목)	「현안, 외국에선?」 제48호 발간 - 패스트패션 퇴출: 지속가능 섬유산업을 위한 EU의 노력	
	11/24(목)	제3회 국가전략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경제안보와 국가전략	국회도서관 1층
입법조사처	11/23(수)	「NARS 입법·정책」 발간 -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과 개선과제	
	11/23(수)	「NARS 입법영향분석」 발간 - 방치건축물정비법의 입법영향분석	

## [별첨1] 제400회 국회(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정무위	11/22(화) 09:30	예결소위	- 예산안 등 심사
	11/22(화) 10:00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 심사
	11/24(목) 10:00	법안심사제2소위	- 법안 심사
	11/24(목) 13:30	전체회의	- 예산안 등 의결, 법안 의결
기재위	11/21(월) 10:00	예산결산기금사소위	- 예산안 등 심사
	11/21(월) 14:00	조세소위	- 법안 심사
	11/22(화) 10:00	예산결산기금소위	- 법안 심사
	11/22(화) 10:00	조세소위	- 법안 심사
	11/23(수) 10:00	조세소위	- 법안 심사
	11/24(목) 10:00	전체회의	- 예산안 등 의결, 법안 상정
	11/24(목) 회의 후	조세소위	- 법안 심사
	11/25(금) 10:00	경제재정소위	- 법안 심사
교육위	11/21(월) 10:00	전체회의	- 법안 및 결의안 상정
	11/22(화) 10:00	전체회의	- 입법공청회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등)
	11/23(수) 10:0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11/24(목) 10:0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외통위	11/23(수) 10:0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행안위	11/21(월) 10:00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 심사
	11/22(화) 10:00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 심사
	11/23(수) 10:00	법안심사제2소위	- 법안 심사
농해수위	11/21(월)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1/21(월) 15:00	농림법안소위	- 입법공청회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률안)
산자위	11/21(월) 10:00	전체회의	- 법안 상정
	11/22(화) 10:00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 법안 심사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11/23(수) 10:00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 심사
	11/24(목)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환노위	11/22(화) 10:00	전체회의	- 입법공청회 (산업전환 시 고용노동 지원법안) - 법안 심사
	11/23(수) 10:00	농림법안소위	- 입법공청회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법안) - 법안 심사
정보위	11/22(화) 10:00	전체회의	- 예산안 상정, 법안 상정
	11/23(수) 10:00	예결소위	- 예산안 심사
	11/24(목) 13:30	전체회의	- 예산안 의결
여가위	11/22(화) 09:30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1/23(수) 09:30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1/24(목) 13:3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상정
예결위	11/22(화) 10:00	예산안등조정소위	- 예산안 등 심사
	11/23(수) 10:00	예산안등조정소위	- 예산안 등 심사
	11/24(목) 10:00	예산안등조정소위	- 예산안 등 심사
	11/25(금) 10:00	예산안등조정소위	- 예산안 등 심사
정개특위	11/23(수) 14:00	국회선진화소위	- 법안 심사
	11/24(목) 10:00	정치관계법개선소위	- 법안 심사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특위	11/24(목) 10:00	제3차 전체회의	-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 프리젠테이션 준비상황 보고

####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21(월) 14:00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오기형·윤창현 의원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1/21(월) 14:00	필수의료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11/22(화) 07:30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 산업	양이원영 의원실,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11/22(화) 09:30	I WILL WORK FOR NOTHING	허은아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11/22(화) 10:30	한·중관계 그리고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	태영호 의원실,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22(화) 14:00	러시아 외교정책의 변화와 한반도	고영인 의원실, 사단법인 돌바네	의원회관 10간담회실
11/22(화) 14:00	LNG 안보 토론회 - 우리나라 LNG 안보 이대로 괜찮은가?	김영주·김정호· 김주영·박영순·이용빈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23(수) 10:00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T-커머스 시장 진입 방안	박찬대·정필모· 정운천·홍정민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23(수) 13:30	카카오 먹통사태로 본 클라우드와 IDC, 정부의 역할과 한계 국회정책토론회	서병수 의원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23(수) 14:00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	이상헌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	의원회관 9간담회실
11/24(목) 09:30	2022년 전기차리더스포럼 - 202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모빌리티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마련 방안	권성동·이주환 의원실, 국회 모빌리티포럼	의원회관 대회의실
11/24(목) 10:00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방안 국회 포럼	송언석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24(목) 10:00	신냉전시대 동북아 고속철도 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응래·양기대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24(목) 15:00	탄소중립시대, ESG 관점에서 본 교량산업 발전방안	김학용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25(금) 14:0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및 과제 토론회	류성걸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61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11/18(금)	<b>「국회도서관 웹진」 제55호 발간</b> - ‘한발 앞서 국가의 미래를 보다’...국가전략 전문가 간담회	
예산정책처	11/16(수)	<b>[NABO Focus 제53호]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주요내용</b>	
입법조사처	11/18(금)	<b>「이슈와 논점」 발간</b> -물관리위원회의 성과 및 발전 방향	
	11/18(금)	<b>「이슈와 논점」 발간</b> -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대외정책의 방향 : 제20차 당대회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14(월) 10:00	<b>국민의힘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정책 육성 세미나</b> - 가만있을 수 없다. 메타버스 생태계, 콘텐츠의 위기와 미래	황보승희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4(월) 13:30	<b>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b>	양금희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11/14(월) 14:00	<b>새로운 시민사회경제정책포럼</b> - 윤석열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환과 전략	윤주경·성일종·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15(화) 14:00	<b>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방안</b>	노용호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16(수) 09:30	<b>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b>	박주민·전주혜· 조정훈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실
11/16(수) 14:00	<b>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b> - 스타트업 인재 발굴과 양성을 중심으로	서병수 의원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6(수) 14:00	<b>새미래포럼 창립기념 특별토론회</b> - 방송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정책과제를 말하다!	김기현 의원실, 새미래포럼 등	의원회관 3간담회실
11/18(금) 10:00	<b>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안 토론회</b>	이종성·전주혜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